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명절이 국민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
-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43조원 공급, '하반기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 등 추진
- 대규모·장기간 민간임대 활성화 및 노후청사 개발을 통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
- 소진공·중진공 대출금리 인하,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업체 유동성 공급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8(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추석 민생안정대책, ②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③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 참석

금일 회의에서는 물가안정 기조 안착 및 민생·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이에 역대 최대 수준인 17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품목(10종)에 대한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아울러, 민생부담을 적극 경감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연매출 1억 4백만원(現 6천만원)까지 확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및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시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 관련 융자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소비 보장 및 투자 진작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근로자 휴가지원 5만명 확대 등을 통해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직원 명절 선물 비과세 및 하반기 지출 증가분·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합니다. 공공투자를 5조원 보장하고 지방재정 6.5조원을 추가 집행하는 한편, 기업투자 지원을 위하여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가동하고, 하반기 중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역동경제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서민·중산층·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대규모(100세대 이상)·장기(20년 이상)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35년까지 5만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既 지급분까지 소급하여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보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합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9월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할 계획입니다.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담당자	사무관	김정아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추석 민생안정대책]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연정은 (044-215-2771)
		담당자	사무관	이동석 (044-215-2772)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	책임자	팀 장	박상우 (044-215-2931)
		담당자	사무관	신승현 (044-215-2939)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30)
		담당자	사무관	박철희 (044-215-2732)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계흥 (044-201-4100)
		담당자	서기관	김세목 (044-201-4476)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준하 (044-215-2850)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51)

[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균 (044-200-4960)
		담당자	사무관	임용남 (044-200-4961)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팀 장	신상록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권진웅 (02-2100-2625)



◇ 정산기준일·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9월중 발표하고 공청회 등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국회 제출 추진

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향(공정위)

- ① **(법 적용대상)** ①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을 중개하는 ②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섭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 규모* 등을 참고하여 법 적용대상 기준을 마련
 - * (법 제2조) 전년도 소매업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천m² 이상
- ② **(정산 기준일·기한)** 업계 관행, 실태조사 결과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정 정산기준일 및 정산기한 검토
 - 오프라인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행 정산기한*보다 짧게 규정
 - *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차) 월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 상품수령일 기준 60일
- ③ **(별도 관리)**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경우 판매대금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일정 비율 별도관리(예치·지급보증 등) 검토
 - * 정산기한 설정과의 중복규제 가능성, 전금법상 PG사 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관리제도 도입 여부 및 별도관리 비율을 결정할 예정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금융위)

- ① **(정산대금 보호 강화)**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토록 의무화
 - * EU, 영국, 중국 등 해외사례 및 선불충전금 입법선례를 고려
 - 신탁·지급보증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며,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
- ② **(PG사 관리·감독 강화)** PG사가 경영지도기준 未준수시, ①시정요구 → ②(미이행시) 영업정지 → ③(미이행시)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 근거 마련
 -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상향*
 - * (현행)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 3억원 / 30억원 초과 10억원
 - 별도관리 자산의 정산목적 외 사용 및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정산대금 미지급시 제재근거 마련